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4. 5. 23.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4. 6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4. 6. 10.) 상정·심사

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4. 6. 11.) 상정·심사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업투자과장 등 4명

나. 제안이유 :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다. 개요

-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비비 지출 사유	지출 결정액	지 출 액	지 출 잔 액
합 계		1,953	1,950	3
일반회계		1,953	1,950	3
기업투자과	부당이득금 청구 소송(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 반환 청구) 종결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	10	10	0
생활안정과	예측불가(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부담)한 상황에 따른 예산외 지출	471	468	3
자원순환과	예측불가(매립장내 화재발생)한 상황에 따른 예산외 지출	970	970	0
산림과	예측불가(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집중발생)한 상황에 따른 예산외 지출	302	302	0
산림과	예측불가(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집중발생)한 상황에 따른 예산외 지출	200	200	0
특별회계		0	0	0

### 3. 검토보고

-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.
- 결산총괄
  -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1,053백만원으로서 총 5건, 1,95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,950백만원을 지출하고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.
- 종합의견
  - 예비비 지출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도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전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소수의견 : 없     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